

## 나노과학기술연구소 규정

**제1조(설치 및 명칭)** 본 연구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며, 그 명칭은 선문대학교 부설 나노과학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국내외의 유관 연구소, 기업체, 단체와 협력 첨단과학기술(나노과학 기술)을 연구하여 국내외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산업,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본교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소(한세계기술연구소(WIT), (미)세계과학기술연구소 (WRIST), (일)WACOM 중앙연구소, (러)TVER대학교 자성연구소, (우크라이나)세계기술 연구소, (한)CERAMIC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2. 신소재 개발 연구
3. 환경에 관한 연구
4. 식량자원개발에 관한 연구
5. 생체공학에 관한 연구
6. 기타 공업화 또는 산업화와 관련된 나노기술분야의 연구
7. 외부로부터 위탁된 연구
8. 학술 논문집 및 기타간행물 발행
9. 연구발표회, 강습회 및 강연회 개최
10. 나노기술학술대회 개최

**제4조(조직)** ①연구소에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②공동연구의 경우 실장을 두고 연구를 진행시킨다.

③연구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소장 및 간사)** ①연구소의 소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연구실장)** ①연구실장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연구실장은 공동연구분야의 연구를 총괄한다.

**제7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사항을 조사연구한다.

③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계획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4. 연구소의 관련 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의 연구비, 외부연구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연구비 지급 및 관리)**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는 본교 연구비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연구소에서 취득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에 관한 모든 권리는 본교가 갖는다.

**제14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5조(규정의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1993.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3.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997.9.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2.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